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,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외래에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의료급여기금부담률을 100분의 95로 변경하고자 하며,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려고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수행(위탁)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안 제20조제2항제5호)
- 나.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 상향(안 별표1 제1호사목 및 제2호카목·파목)
- 다.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함(안 별표5 제1호다목1)~3)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0.00 ~ 0.00.)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
별표 1 제1호사목, 제2호카목 및 같은 호 파목 중 “100분의 90을”을
각각 “100분의 95를”로 한다.

별표 5 제1호다목 본문 중 “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
등을 고려하여”를 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”으로, “늘일
수 있다”를 “늘릴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목 단서 중 “늘이는”을 “늘리는”
으로 하며, 같은 목에 1)부터 3)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
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업무의 위탁) ① (생략)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. 1. ~ 4. (생략) 5. <신설>	제20조(업무의 위탁) ①, ② 1.~4. (현행과 같음) 5. <u>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부담 이득금의 징수</u>
[별표 1]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1. 1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~바. (생 략) <u>사. 가목1)가)(1)·(3), 같은 목 2가)(1)·(3) 및 같은 목 3)가)(1)·(3)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주사제를 의료급여로</u>	[별표 1]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1. 1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~바. (현행과 같음) 사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<u>실시하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.</u> 아. (생략) 2. 2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~차. (생략) <u>카. 가목1)가(1)·(3)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.</u> 타. (생략) <u>파. 타목1)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</u>	----- ----- <u>100분의 95를</u> ----- --. 아. (현행과 같음) 2. 2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~차. (현행과 같음) 카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0분의 95를</u> -----. 타. (현행과 같음) 파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<u>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.</u> 하~머. (생략) [별표 5] 과태료 부과 기준(제22조 관련) 1. 일반기준 가~나. (생략) 다. 보건복지부장관은 <u>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</u>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<u>늘일 수 있다.</u> 다만, <u>늘이는</u> 경우에도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 1)~3) (신설))	----- ----- <u>100분의 95를</u> -----. 하~머. (현행과 같음) [별표 5] 과태료 부과 기준(제22조 관련) 1. 일반기준 가~나. (현행과 같음) 다. 보건복지부장관은 <u>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u>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<u>늘릴 수 있다.</u> 다만, <u>늘리는</u> 경우에도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 1) <u>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</u> 2) <u>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</u> 3) <u>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</u>

현행	개정안
	<u>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</u> <u>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</u> <u>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</u> <u>되는 경우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092